



## 임금피크제 폐기!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대표자 릴레이 농성 진행

임금피크제 폐기, 복지축소 원상회복 요구하는  
기재부 앞 릴레이농성  
건강보험노조 12월 3일부터 간부파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1월 29일 목요일 기재부 정문(북문) 앞에서 임금피크제 폐기! 단협 원상회복! 공공기관 노조 릴레이 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30일부터 릴레이 농성을 펼쳤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기관 노조들은 12월 3일(월)부터는 수위를 높여 기재부 앞에서 철야농성을 진행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 공공기관 노조들이 매일 릴레이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건강보험노조는 12월 3일부터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 간부파업을 진행했다. 12월 6일까지 진행된 이번 농성에 발전노조는 중앙집행부가 중심이 되어 임금피크제 폐지투쟁에 함께했다.

### 임금피크제 노·정(기재부) 협의(18.12.05) 진행사항 요약

- 2019년부터 폐지되는 임금피크제 지원제도를 대체하는 임금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올 12월중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집행할 예정.
- 장년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해 임금피크자의 노동시간을 단축할 예정.
- 임금피크제 폐지를 포함 전반적 문제점은, 임금피크제 실태조사 및 용역결과를 통해 중장기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라는 기재부 입장을 확인.
- 부처 간 협의 완료 후 빠른 시간 내 2차 노정협의 개최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 공공운수노조 및 산하 발전노조 전 조합원 서명운동 진행 중입니다.  
반드시 동참 바랍니다.**

## 기만과 위선으로 점철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밀어붙이기를 중단하라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동계약의 쌍두마차

보수야당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해왔다. 발의 내용은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 3개월을 1년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 및 여당의 노동정책 우경화의 흐름 속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는 현재 여야정이 합의된 사항이며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탄력근로제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경영계와 여야정은 왜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려는 것인가?

### 탄력근로제의 첫 번째 문제, 장시간 노동의 합법화

탄력근로제란 법정근로시간을 변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에서는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제51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앞면에서 이어집니다.) 여기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 52시간'은 연장근로와는 별개라는 것이 법률적 해석이다. 따라서 1주 연장근로 12시간을 고려하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4시간까지 가능하다. 또한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 12시간'도 마찬가지로 연장근로와 별개이다. 따라서 1주 연장근로 12시간을 하루에 몰아서 사용할 경우 1주 중 한 번은 24시간 연속 근로가 가능하다.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 1주 최대 근로시간 :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 52시간 + 1주 연장근로 12시간 = 64시간
- ◆ 1주 1회 최대 연속 근로시간 :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 12시간 + 1주 연장근로 12시간 = 24시간

## 탄력근로제의 두 번째 문제, 임금삭감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도입 전에는 지급했어야 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급 1만 원의 노동자가 격주 단위로 한 주는 52시간을 일해야 한다면, 탄력근로제 미도입 시 한 주는 40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한 주는 52시간을 일한다. 한편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경우 한 주는 28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한 주는 52시간을 일한다. 임금을 식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 탄력근로제 미도입 :  $(40 * 10,000) + (40 * 10,000) + (12 * 15,000) = 98$ 만 원
- ◆ 탄력근로제 도입 :  $(28 * 10,000) + (52 * 10,000) = 80$ 만 원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18만 원, 비율로 따지면 18.4%의 임금이 삭감된다는 것이다. 물론 28시간 일하는 주의 노동 강도에 대한 부담은 온전히 노동자가 지게 된다.

##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는 장시간 노동과 임금 삭감의 범위 확대이다

앞서 봤듯이 탄력근로제는 현행법에도 문제는 많다. 그런데 만약 단위기간이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여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연간 법정근로시간과 최장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6개월                             | 나머지 6개월                         | 1년      |
|--------|---------------------------------|---------------------------------|---------|
| 법정근로시간 | 1,352시간<br>[(40+12)시간 * 26주]    | 728시간<br>[(40-12)시간 * 26주]      | 2,080시간 |
| 최장근로시간 | 1,664시간<br>[(40+12+12)시간 * 26주] | 1,040시간<br>[(40-12+12)시간 * 26주] | 2,704시간 |

현행 탄력근로제가 도입된 발전현장의 경우 간이정비 또는 C급 계획예방정비까지는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단위기간이 1년으로 확대된다면 B급이나 A급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해지며, 이에 따른 결과가 장시간 노동과 임금삭감이라는 점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계약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다.

## 탄력근로제의 부작용은 논의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것

연장근로수당은 왜 존재하는가? 연속 노동시간이 늘어날수록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는 정도가 커지기 때문이다. 탄력근로제는 애초부터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권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의 기준이 되는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결과까지 초래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에서 참석하여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를 의제로 논의한다면 장시간 노동 등 부작용을 없애는 장치와 임금을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했다. 장시간 노동과 임금삭감이 탄력근로제의 근본적인 부작용인데 대관절 어떻게 없애겠다는 건가?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애정 운운하던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경사노위를 서둘러 출발하는 것은 경제·일자리 현황이 엄중하고 과제 또한 막중하기 때문"이라며 눈물을 흘린 후 민주노총의 조속한 경사노위 참여를 촉구했다. 악어가 서러워 통곡할 지경이다.